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1153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2.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19. 접수 제270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158호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2024. 6. 27.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174호) 진행 중인데, 해당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관리책, 유인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인터넷 쇼핑몰과 코인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끌어들이는 피해자들을 위 가짜 인터넷 쇼핑몰과 가짜 코인 투자서비스 사이트로 유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보증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판매 업무, 코인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 하는 범죄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23.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트남으로 와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면, 매일 베트남 화폐 100만 동(한화 약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3. 11.경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 ‘탄탄’,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진열된 물품 가액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해두면 그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고, 예치했던 보증금의 12%를 이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알려준 위 주소는 가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주소였고, 피해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예치해두더라도 물품을 판매하여 보증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11. 24. 경부터 2023. 12. 7.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쇼핑몰 판매 물품 보증금 명목으로 71,608,663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1. 24.경부터 202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수법 또는 코인 투자 서비스(G 등)를 알려준 다음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서비스를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130%~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360,024,06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3. 11. 24.경부터 2024. 2. 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7군 지역(한인타운)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기화로, 총 200회에 걸쳐 위 피해금 1,360,024,060원을 포함한 합계 1,742,391,985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12개의 계좌로 각각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2024. 1. 4.부터 같은 달 1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280만 원을 C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편취당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 피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7057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4. 8. 27. ‘C은 원고에게 88,84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9.부터 2024.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4. 9. 11.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24. 2.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4. 2. 14.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88,842,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시송달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C을 상대로 민사판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C이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키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위 판결의 확정적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판결로써 확정된 원고의 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고가 공유지분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다가 C으로부터 그 지분(1/4)을 정당하게 추가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은 'C이 작은 아버지인 피고로부터 빌린 생활비 및 각종

경비로 8,6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채무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대물변제한다'는 취지의 2023. 11. 20.자 변제계약을 작성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종전 채무의 대물변제로 갚음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2024. 2. 14. 자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C의 작은 아버지로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어 인적 신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던 점, ② C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범죄행위를 종료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C은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추급에 대비하기 위해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도 없는 점, ④ 또한 피고는 C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없어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의 신용불량 등의 경제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C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별지목록

1. 서울 강북구 대 149㎡

지분 4분의 1

2. 서울 강북구

벽돌조슬래브지붕2층주택

1층 74.34㎡

2층 66.36㎡

지층 78.84㎡

(내역:지층중 69.12 주택 9.72 보일러실임)

지분 4분의 1

